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52
----------	------

제출년월일 : 2025년 2월 3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규정 신설 (안 제4조)
-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추진 규정 신설
(안 제5조부터 제7조)
-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안 제8조부터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일부반영)

※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개선의견을 반영, 법령상 근거 없는 행정조사 관련 사항은 조례안과 무관하여 미반영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관련 규정): 적정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24.11.14.~12.4.) 결과: 의견있음(일부반영)

※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 임명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의견 반영, 비상설위원회 운영방법 변경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반영

(2)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없음

※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황태현(☎ 2133-8047)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해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실험 및 기술경연을 통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지원

2. 재난안전기술, 재난안전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3.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5. 재난안전 대응 공간·제품·시각·미디어·서비스 등 안전디자인 개발 및 품질평가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실증실험) ① 시장은 재난안전신기술 실증이 필요한 경우, 신청기업 신청제품을 모집하기 위해 지원 목적 및 지원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실증실험을 통해 성능·기술이 검증된 기술 및 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실증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실증실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영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반시설의 혁신적 기술 발굴·적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된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임명직 위원: 서울특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재난안전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재난안전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행정2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 부서장이 맡는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육성 사업

제14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 용 추 계 서

I .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 등의 수립) 및 제7조(실증실험)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신기술 실증실험 등 육성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기간 : 향후 5년(2025년~2029년)
- 지출
 - 연구용역비 :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인건비 등)
 - 사무관리비 :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증실험 평가 (용역비)
- 비용지급대상 : 서울연구원, 공인시험기관
 - 서울연구원 : 서울시 출연 정책연구기관
 - 공인시험기관(KORAS) : KTR시험연구원, KCL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등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평가업체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 연구용역비	-	100,000	-	-	-
○ 사무관리비		-	200,000	200,000	200,000	200,000	800,000
소계(a)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수입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시비	지방세수입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등	-	-	-	-	-	-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	300,000	200,000	200,000	200,000	90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성자 : 재난안전실 재난안전정책과 황태현(2133-8047)

II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산출내역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00,000천원/5년 연구용역비(종합계획,5년)은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비용추계 (부산 61,600천원, 경북 50,000천원)
실증실험 용역 (사무관리비)	200,000천원/연 = 용역비 평균 1000만원/건 x 20건/연